

구미오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5조(임원 등) ①문화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.

(개정 2004.11.06)

②**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은 구미시의회부의장, 구미교육청학무과장, 구미문화원장, 구미시체육회실무부회장, 예총구미시지부장, 구미시 담당국장으로 하며, 그 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.**

<개정 2007.7.1., 2018.12.31., 2019.11.13.>

③**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**

경상북도 공문 : 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 설립허가

우 702-702 대구, 북구, 산적동 1445-3 / 전화 950-3311 / 전송 950-3319
문화예술과, 문화예술과장 사무관 담당자

문서번호 문예 86300 -56

시행일자 2001. 2. 12(10년)

공개여부 공개

수 신 구미시장

참 조 문화업무담당과장

선람	결정	지시
접	일자	결재
수	번호	공
처리과	계획담당관	람
담당자		람
심사자		심사일

제 목 : 재단법인(공익법인)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 설립허가

1. 구미 기획01600-71(2001.1.31)호와 관련입니다.
2. 구미시 원평동 1008-53 김국상으로부터 허가 신청된 "재단법인(공익법인)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" 설립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,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4조, 동법시행령 제5조, 행정자치부의인의탁에관한규정 제28조 제2항9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니 법인의지도·감독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- 가. 법 인 명 : 재단법인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
- 나. 소 재 지 : 구미시 원평동 371-5
- 다. 대 표 자 : 김 국 상
- 라. 설립목적 : 지역문화예술 및 향토체육발전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인재 발굴
- 마. 허가일시 : 2001. 2. 12.

- 붙 임 : 1.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1부.
2. 허가조건 사본 1부.
3. 임원취임 인가서 사본 1부.
4. 정관 사본 1부. 끝.

경 상 북 도 지

전결 행정부지사 김 주

